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3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고동진 · 엄태영
박충권 · 김형동 · 김대식
윤한홍 · 임종득 · 이현승
김재섭 · 김선교 · 강대식
진종오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,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,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,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결의로 하도록 함(안 제16조의3제1항).
- 나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하도록 함(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).
- 다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1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).
- 라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·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5제1항).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·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주식매수선택권”이라 한다)를 부여할 수 있다”를 “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주식매수선택권”이라 한다)를 부여할 총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, 그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·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)

제16조의4제1항제2호 중 “수”를 “총 한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”을 “이사회 결의에서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

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5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

제16조의5제1항 본문 중 “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”을 “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”를 “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이”로 한다.

제16조의6제1항 중 “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”를 “제16조의4제2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3(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)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 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<u>해당 기</u> <u>업의 설립 또는 기술·경영의</u> <u>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</u> <u>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</u> <u>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</u> <u>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주식</u> <u>매수선택권”이라 한다)를 부여</u> <u>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주주총회 의 결의는 「상법」 제434조를 준용한다.	제16조의3(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) ① ----- ----- ----- <u>해당 기</u> <u>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</u> <u>권리(이하 “주식매수선택권”이</u> <u>라 한다)를 부여할 총 한도를</u> <u>정할 수 있으며, 그 범위에서</u> <u>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·</u> <u>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</u> <u>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</u> <u>각 호의 자에게 이사회</u> <u>의 결의</u> <u>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</u> <u>수 있다.</u>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회 사의 임직원(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제외한다)
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4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)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
3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
4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
5. (생략)

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

제16조의4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총 한도

<삭제>

<삭제>

3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 -----
이사회 결의에서는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
조정에 관한 사항

<삭제>

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
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
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
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의5(주식매수선택권의 행
사)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
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
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
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
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
있다. 다만, 제16조의3제1항제3
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
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
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
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
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
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
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6조의6(주식매수선택권의 신
고 등) ① 주식매수선택권을
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
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

제16조의5(주식매수선택권의 행
사) ① -----

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
1년-----

-----이사회의
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이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6(주식매수선택권의 신
고 등) ① -----

-----제16조의4제2

<u>항과 제3항에</u>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에 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<u>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